

#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8-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개정이유

-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정비함으로써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「경관법」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과 사업비 규모 등을 명시(안 제25조)
  - 도로 및 하천시설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)
  - 도시공원 경관심의 포함
- 나.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(안 제26조)
- 다. 효율적 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항 수정(안 제27조)
- 라.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(안 제30조, 안 제31조)
- 마. 세부 규칙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(안 제14조, 제22조, 제33조)
- 바.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일(별표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(현행 조례 포함)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 결과 : 붙임4

○ 입법예고 : 2018. 5.10. ~ 5.30. [20일간]

○ 예고결과 : 의견 제출 2건(반영 : 2건)

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붙임5
- 타 지자체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규모 : 붙임6

< 붙임 1 >

##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중 “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” 을 “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필요 자급에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 를 “규칙으로 정한다.” 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시장이 정한다.” 를 “규칙으로 정한다.” 로 한다.

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) ①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, 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, 설계변경 포함)
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, 설계변경 포함)

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 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

제2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

제2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“각각 경관위원회, 도시계획위원회, 건축” 을 “각” 으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“(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” 을 “(경관위원회 운영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1조의 제목 “(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)” 을 “(소위원회 운영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과		도시디자인과
입 안 자	과 장 직위·성명	도시디자인과장 정 명 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경관팀장 곽 재 학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명 석 (행정 2632)

[별표]

□ 경관심의 건축물(제26조 관련)

구 분		건 축 물 의 종 류
1. 경관지구	대부동 경관지구	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㎡ 이상인 건축물
	대부동 외 경관지구	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
2. 공공 건축물		<p>가.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(협의) 대상 공공건축물 - 공공청사(시청, 구청, 사업소, 동 등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관람장, 전시장 등)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묘지관련시설( 화장장, 납골당 등) 등</p> <p>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</p> <p>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</p>
3.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		<p>가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</p> <p>다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건축물</p>

※ 경관지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관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.

< 붙임 2 >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4조 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	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	제14조 (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)	①	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필요 자급에
	② ~ ③ (생략)		② ~ ③	(현행과 같음)
	④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	④	규칙으로 정한다.
제22조 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	① (생략)	제22조 (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)	①	(현행과 같음)
	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		②	규칙으로 정한다.
		제25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)	①	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, 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
				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, 설계변경 포함)
				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, 설계변경 포함)
			②	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
	<u>&lt;신 설&gt;</u>			
제26조 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	① ~ ② (생략)	제26조 (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)	① ~ ②	(현행과 같음)
	4. 「건축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		4.	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
	5. ~ 6. (생략)		5. ~ 6.	(현행과 같음)
제27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		제27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		

현행	개정안
<p>① (생략)</p> <p>1. 공동위원회는 도시건축분야로 도시경관 공동위원회는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제2분과위원회위원, 건축경관위원회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위원으로 각 30명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2. 삭제 &lt;2017. 9.29.&gt;</p> <p>3.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, 도시계획위원회, 건축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.</p> <p>4.~ 8. (생략)</p> <p>제30조(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시의회 의원</p> <p>2. 시 또는 경관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</p> <p>3. 건축·도시·조경·토목·교통·환경·문화·농림·디자인·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 <p>2. 삭제 &lt;2017. 9.29.&gt;</p> <p>3. ----- 각 -----</p> <p>4.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경관위원회 운영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1조(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사항”은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</p>	<p>제31조(소위원회 운영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</p>

#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9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4일
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조례입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동일 조문 내의 1항의 서술식 형태와 동일하게 2항 역시 서술식 형태로 수정함.

## 주요내용

-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중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 대상에 대하여 “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”을 “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말한다.”로 수정함.  
(제25조)

#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” 을 “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말한다.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### □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5조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5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)</p> <p>①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 나목, 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, 설계변경 포함)</p> <p>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(보상비 제외, 설계변경 포함)</p> <p>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</p>	<p>제25조(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 및 규모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말한다.</p>